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24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송옥주)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대상 확대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공개하는 대상을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번호,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⑤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⑥ 이용약관, ⑦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에서는 ⑤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⑥ 이용약관, ⑦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가 존재함.

한편, 여성가족부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중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국제결혼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비교 >

(단위: %, 명)

	사례수	친구 또는 지인의 추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광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직원 통해	TV·신문· 잡지 광고	벽보, 플래카드, 스티커 등	종교 기관	기타	계
2023	(507)	35.8	47.4	16.3	2.4	4.7	0.2	1.7	-
2020	(1,060)	39.6	50.0	10.9	3.2	3.2	0.2	1.8	-
2017	(1,010)	43.7	27.6	21.8	3.7	2.5	0.1	0.7	100.0
2014	(797)	48.1	20.8	22.2	3.8	3.4	1.0	0.8	100.0

※ 출처 :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2020년과 2023년 조사는 복수응답, 2014년과 2017년 조사는 단일응답 방식임)

이에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수수료·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²⁾에서는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사한 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이용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혼중개업 이용을 위해 오프라인(off-line)상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온라인(on-line) 상의 결혼중개업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로 해석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이용자’를 ‘누구든지’로 개정하더라도 현행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를 개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상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이용자’란 계약을 체결한 사람 뿐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향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은 미미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결혼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의 정보 공개 대상을 ‘이용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 략)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 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 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 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u>이용자가</u>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 ----- ----- ----- ----- <u>누구든지</u> ----- ----- -----.